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과 보험산업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1.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의 추진

정부가 자본시장과 관련한 업종을 통합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 법률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6년 2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²⁾(이하 자본시장 통합법이라 약칭함)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증권, 자산 운용, 선물, 종합금융, 신탁업 등 투자 관련 법을 통합하고 파생상품, 비정형간접투자 등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이 하나의 기준과 체제 하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준과 체제의 통일은 종목 간 칸막이의 제거를 의미하며 이는 곧 상호 경쟁을 통한 강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현재 금융시장 통합법과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은 보험을 포함하는 타 업권 관련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업무의 범위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이하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칭함.

2.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

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투자 관련 업종을 기능별 규율 체제로 재정비하고 포괄주의 체제 도입 및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임.

- 자본시장 통합법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투자금융 관련 법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 금융투자 업종의 구분을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관리 등 기능별로 나누고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규율을 적용
 - 국경간 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기능별 규율 원칙 하에 적용 대상과 방법을 설정
 -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규율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한 다음 일부 상품을 열거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인 정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
 - 업무 범위 확대 : 기능별로 나누어진 업종에 대한 상호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이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업종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겸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
 -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고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합투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펀드, 외국환 등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완화하거나 폐지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금융투자업의 업무 및 취급 상품 범위의 확대에 따라 보호체계 미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함.
 - 특히, 장외파생상품과 비정형간접투자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체제 구축

- 투자권유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 도입
-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은 자본시장의 발달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금융통합법으로 가는 전단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은 사실상 예금, 대출, 보험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 업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초대형 금융기관의 탄생도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들어질 경우 금융관련법의 종류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기타 등으로 나뉘어져 사실상 크게 3가지로 축약됨에 따라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통합법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간단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금융통합법도 은행, 보험, 금융투자를 3대축으로 하여 각각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던 만큼 금융투자 부문의 통합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현행 금융법 체계



주: 1) 비정형 간접투자는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유한회사 등 현행 간접투자관련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임.
 2) 점선 부분은 현재 투자자보호 법제가 없는 부분
 자료 : 재정부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

3.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의 범위 확대 및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으로 보험산업의 영역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에 대한 지급결제기능의 도입이 보험산업에도 허용될 경우 종합자산관리기관을 지향하는 보험산업의 비전 달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업무 영역과 취급 상품의 범위에 한정해서 논의하고자 함.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은 파생상품과 신종증권 등에 있어서 보험상품의 영역에 해당되는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시장 통합법은 투자상품의 영역에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까지를 포함함에 따라 보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업계에서 꾸준히 부수업무의 대상으로 논의되어왔던 날씨파생상품이나 재해연계증권(CAT bond)이 금융투자업의 취급상품으로 포함될 것임.
 -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위험을 근거로 한 파생상품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업무영역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상품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파생상품은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날씨파생상품을 비교할 경우 부보대상 사건의 우연성과 미래의 특정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내용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상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험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o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파생상품이라는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기본적으로 외생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의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보험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

- 금융투자업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은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허용, 교차판매 허용 등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판매채널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o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와 교차판매의 허용은 전속 보험설계사 중심의 국내 보험시장의 판매채널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o 금융투자업에서도 판매권유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설계사들과 수익증권 판매에서 경쟁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와 판매조직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o 향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다양한 상품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백화점식 전문 금융판매사 조직의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지급 결제 기능>

- 금융투자업의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금융 산업의 3대축 중 은행과 증권이 종합금융기관을 지향하게 됨을 의미함.
- o 금융투자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되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 이체, 출금, 입금, 카드·지로 결제 등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고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산업의 경우 장기자산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의 확보가 필수적임.
- 보험산업만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이 사실상 은행과 증권 의 2대축으로 개편되어 갈 가능성이 높음.

<간접투자 환경 개선>

- 펀드를 이용한 투자 환경의 개선에 따라 금융투자업 자체의 경영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간접투자기구 활용도를 크게 개선하고 사모펀드 등 펀드와 관련된 각종 제한과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의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이 크게 확대될 것임.
- 투자 대상이 어업권, 광업권, 보험금지급청구권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면서 금융투자업의 영업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위탁을 통한 자산운용의 범위와 방법이 확대되고 사모펀드 등 펀드와 관련된 각종 제한과 규제가 제거됨으로써 자산운용 환경이 개선될 것임.

4. 시사점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을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와 경영 환경 개선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으로 보험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금융투자업의 취급 가능 상품이 날씨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음.
- 판매 권유자 제도의 도입도 사실상 외부 영업 조직을 이용한 마케팅을 독점해왔던 보험산업의 입장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업이 지급결제기능까지 확보할 경우 보험산업은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보험산업도 지급결제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종합자산관리기관을 지향하는 비전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임.
-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처의 다변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 자체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에 따라 보험산업은 금융산업의 주요 축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할 확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파생되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
 - 우연한 사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 날씨파생상품은 특성상 보험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날씨파생상품과 재해연계증권(CAT bond)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진행과 함께 보험산업의 부수업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날씨파생상품은 날씨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보험회사들은 핵심 역량 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은 금융투자업의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산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 허용, 교차판매제도 도입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매 채널 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직관 채널의 발달 등으로 보험회사의 가용 채널은 크게 다변화되어 있는 만큼 상품 및 목표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판매채널 관련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지급결제기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고령화, 종합금융서비스화 등 다양한 추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반면, 보험회사의 향후 비전에 따라 지급결제 기능의 필요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있어서 위탁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방법이 크

계 확대된 만큼 자산운용의 다변화에 노력하고 사모펀드 등의 참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소형사의 경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공동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